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67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3327	백혜련의원	2024. 8. 2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1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 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에 상정
2209122	김병기의원	2025. 3. 19.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
2209221	김상훈의원	2025. 3. 21.	
2209463	김상훈의원	2025. 3. 28.	
2210213	유동수의원	2025. 4. 29.	
2214740	김승원의원	2025. 12. 1.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 12. 15.)

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2. 16.)는
위 6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3. 부대의견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진행상황이 당사자 등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을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로,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

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인증업무”를 각각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지정”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

증”을 각각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로, “인증”을 “지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

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되었던 사건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분쟁조정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 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 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 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 (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 다)을 하는 <u>사업자에 대하여</u> <u>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u> (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 ----- ----- ----- -----사업자를 소비자 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
②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u> <u>려는 사업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u> <u>정받으려는 자</u> ----- ----- -----.
③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u> <u>사업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인증의 표시를</u> 할 수 있다.	③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u> <u>정받은 자</u> ----- -----지정----- -----.
④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u> <u>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u> 3년으로 한다.	④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u> -----지정-----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 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
-----.

⑥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
-----지정-----
-----.

⑦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①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

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생략)

라 한다)-----
-----.

②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

-----.

③ -----지정심사기관-----
-----지정심사기관-----
-----.

1. (현행과 같음)
2. -----
-----지정심사업무-----
3.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4. -----지정심사업무-----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

6. -----
-----지정심사업무-----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지정-----
-----.
-----지정-----
-----.

1.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2.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3.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u>	3.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u> ----- ----- ----- ----- -----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u>소비자중심경영인증</u>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u> ----- <u>지정</u> ----- ----- -----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u> -----.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	⑤ ----- ----- ----- ----- ----- -----

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 ⑦ (생 략)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58조(처리기간) ① ----- -----
---	--

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
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
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
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
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 <단서 삭제>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
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
63조의2제2항의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u> <u>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u> <u>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u> <u>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u> <u>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u>
제6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58조</u>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	① ----- ----- ----- <u>제58조제1항</u> ----- ----- ----- -----

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65조(분쟁조정)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6조(분쟁조정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생략)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분쟁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8조제1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분쟁조정기간) ① -----
----- 제58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제1항 -----

-----.

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제1항 -----

-----.

② ~ ③ (생략)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

